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0나20370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1. A
2. B

원고(선정당사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섭

피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판석, 최정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심지은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10. 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8가합592571 판결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E, G, J, L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1. 가.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10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선정자 E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14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선정자 G에게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선정자 J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가.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선정자 L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E, G, J, L에 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면 4~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M는 양돈위탁관리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회사명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 특수목적법인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P,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S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자, 양돈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U(상호 변경 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W은 N, D, P의 감사, Q, O, R, S, T의 사내이사로서 전무 직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각 회사들의 자금관리 및 기획을 담당하였다. 』

5면 11행의 “2017. 8. 18.”을 “2017. 8. 16.”로 고친다.

6면 3행 및 4행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E, G, J, L”으로 모두 고친다.

6~7면 표 중 F, K, I, H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

6면 각주 3)의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7호증의 1, 2”로 고친다. 10면 각주 6)의 “가축분뇨재출시설허가증”을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증”으로 고친다.

12면 아래에서 7행의 “지급하여”를 “지급하여 2013. 12. 24.”로 고친다.

13면 2~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3, 4, 6, 8, 9, 갑 제4호증의 3, 4, 5, 갑

제6호증의 2 내지 6, 8,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16, 19, 22, 25, 33호증, 을 제4 내지 10, 12 내지 16, 18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W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13면 7행의 “위탁금”을 “위탁대금”으로 고친다.

14면 6행의 “피해기”를 “피하기”로 고친다.

14면 아래에서 5~6행의 “원고 F의 … 채권은” 부분을 “선정자 E의 2012. 8. 6.자 채권 및 2012. 9. 7.자 채권, 선정자 L의 2012. 6. 29.자 채권은”으로 고친다.

14면 아래에서 1행의 “원고 J”를 “선정자 J”로 고친다.

15면 2~3행의 “원고 G의 … 2013. 9. 30.자 채권은” 부분을 “선정자 G의 2013. 8. 29.자 및 2013. 10. 15.자 채권, 선정자 J의 2013. 9. 30.자 및 2014. 3. 13.자 채권은”으로 고친다.

18면 아래에서 1~2행의 “공동담보목록”을 “공동담보목록 2011-910호에 기재된 13개 부동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AF농장 순번 2, 3, 4, AL농장 순번 4, 6, 7, 9 내지 13, AJ농장 순번 2, 4 부동산이다. 이하 ‘13개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친다.

19면 2행의 “Y은행”을 “AB은행”으로 고친다.

19면 10~11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으로, 같은 면 12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부동산”으로 각 고친다.

19면 아래에서 5행의 “이 사건 농장 부동산의”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으로 고친다.

20면 6행의 “BL의 담보신탁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BL의 담보신탁등기, AB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고친다.

22면 5~6행의 “원고가”를 “D가”로 고친다. 22면 16행의 “원고에”를 “D에”로 고친다.

3.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을 제7호증(2013. 11. 21.자 수익권증서)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3. 6. 10. 2차 대출금이 변제된 이후 추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2013. 10. 31.자 신탁원부 변경은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을 제7호증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2013. 6. 10. 2차 대출금이 전액 변제되었고, 2013. 11. 21.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2013. 11. 21. 이후 BL이 D의 회계 및 자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원고들 주장 사정과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을 제7호증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38호증, 을 제6, 20,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차 대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지목이 ‘과수원’ 또는 ‘전’인 13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95개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6. BL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2차 대출금이 2013. 6. 10. 변제된 후 위 각 부동산 중 AJ농장의 9개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8. 21.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다시 B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AF농장의 11개 부동산에 관하여도 2013. 10. 31.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다시 B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나머지 75개 부동산의 BL 명의 신탁등기는 그대로 유지된 사실, ③ 3차 대출약정서(을 제6호증) 제10조 제9항은 “차주는 본 약정의 기간 동안 담보설정이 가능한 자산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대주가, 차주가 대주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담보의 설정을 요구하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차 대출의 대주단은 2차 대출금이 변제되자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한 사실, ④ 이에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 따라 마쳐졌던 AJ농장 9개 부동산에 관한 2013. 8. 21.자 신탁등기는 2013. 10. 3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변경되었고(신탁계약의 수익자, 채무자, 수익권증서금액은 나머지 75개 부동산과 같다), AF농장 11개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3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나머지 75개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31.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AB은행에서 AB은행 및 BC은행으로, 채무자를 Q(2차 대출의 차주)에서 R(3차 대출의 차주)으로, 수익한도금액을 110억 5,000만 원(AB은행)에서 113억 7,500만 원(AB은행 47억 7,750만 원, BC은행 65억 9,750만 원)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 ⑤ 이후 BL은 2013. 11.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95개 부동산에 관하여 AB은행 앞으로 수익한도금액을 57억 7,750만 원으로 하는 수익권증서(을 제7호증)를 발행하였고, 위 수익권증서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내려진 A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2018. 1. 8.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다음으로 위 2013. 10. 31.자 신탁원부의 변경 등이 사해신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대출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당초 각 대출시마다 제공한 담보는 해당 차수의 대출금 상환으로 해제되더라도 다른 차수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담보제공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신탁원부의 변경 등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위 2013. 10. 31.자 신탁원부의 변경 등과 관련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훈, 판사 홍승구, 판사 홍지영

선 정 자 명 단

- 1. A
- 2. B
- 3. E
- 4. G
- 5. J
- 6. L
- 끝.

목목

AE농장

순번	부동산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 목장용지 35444㎡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T 입야 18167㎡ 중 10분의 4지분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U 입야 1881㎡ 중 10분의 4지분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V 입야 3904㎡ 중 10분의 4지분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BW호 경량철골조 갈바름지붕 단층돈사 711㎡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BX호 경량철골조 갈바름지붕 단층돈사 840㎡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BY호 경량철골조 갈바름지붕 단층돈사 840㎡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BZ호 경량철골조 갈바름지붕 단층돈사 720㎡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A호 경량철골조 갈바름지붕 단층돈사 1150㎡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B호 경량철골조 갈바름지붕 단층돈사 880㎡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C호 경량철골조 갈바름지붕 단층돈사 546㎡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D호 경량철골조 갈바름지붕 단층돈사 560㎡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E호 경량철골조 갈바름지붕 단층관리사 84.32㎡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F호 경량철골조 갈바름지붕 단층관리사 50.32㎡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G호 경량철골조 갈바름지붕 단층창고 및 관리사 50.32㎡
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H호 경량철골조 갈바름지붕 단층관리사 84.32㎡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I호 경량철골조 갈바름지붕 단층화장실 및 샤워장 16.24㎡
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J호 경량철골조 갈바름지붕 단층 퇴비처리장 208㎡

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K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 퇴비건조장 873.0㎡
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L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632㎡ 중 10분의 4 지분
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M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560㎡ 중 10분의 4 지분
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N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540㎡ 중 10분의 4 지분
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O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272㎡ 중 10분의 4 지분
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P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211.20㎡ 중 10분의 4 지분
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Q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372.30㎡ 중 10분의 4 지분
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R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939.06㎡ 중 10분의 4 지분
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CS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676.8㎡ 중 10분의 4 지분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T에 있는 CU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781.20㎡ 중 10분의 4 지분
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T에 있는 CV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181.04㎡ 중 10분의 4 지분
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T에 있는 CW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445.20㎡ 중 10분의 4 지분
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T에 있는 CX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112.50㎡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112.50㎡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27.0㎡ 중

	10분의 4 지분
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T에 있는 CY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125.0㎡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125.0㎡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30.0㎡ 중 10분의 4 지분
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Z에 있는 DA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돈사 189.0㎡ 중 10분의 4 지분
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B에 있는 DC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 톱밥돈사 426㎡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 사무실 30㎡ 중 10분의 4 지분
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Z에 있는 DD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 톱밥돈사 220㎡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 사무실 30㎡ 중 10분의 4 지분
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B에 있는 DE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공동관리사 100.8㎡ 중 10분의 4 지분
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T에 있는 DF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관리사 116.16㎡ 중 10분의 4 지분
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T에 있는 DG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관리사 82.56㎡ 중 10분의 4 지분
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DH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관리사 104㎡ 중 10분의 4 지분
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B에 있는 DI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관리사 및 창고 124.50㎡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창고 37.92㎡ 중 10분의 4 지분
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Z에 있는 DJ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창고 및 관리사 110.5㎡ 중 10분의 4 지분
4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B에 있는 DK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관리사 36.40㎡ 중 10분의 4 지분

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DL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 퇴비건조장 608㎡ 중 10분의 4 지분
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Z에 있는 DM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 퇴비건조장 690.0㎡ 중 10분의 4 지분
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N에 있는 DO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 퇴비건조장 468.0㎡ 중 10분의 4 지분
4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S에 있는 DP호 경량철골조 갈바륨지붕 단층 돈분창고 330.0㎡ 중 10분의 4 지분

AK농장

순번	부동산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Q 목장용지 2584㎡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R 목장용지 4773㎡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S 목장용지 1020㎡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T 목장용지 1621㎡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Q, DT에 있는 DU호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돈사 1153.5㎡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Q, DT에 있는 DV호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돈사 653.65㎡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Q, DT에 있는 DW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관리사 67.50㎡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R, DU호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돈사 1153.5㎡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R, DV호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돈사 653.65㎡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R, DW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관리사 67.50㎡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R, DX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33.12㎡

AF농장

순번	부동산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Y 잡종지 4050㎡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Z 전 2991㎡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A 전 151㎡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B 전 2271㎡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Y, DZ에 있는 EC호 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 돈사 138.7㎡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Y, DZ에 있는 ED호 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 돈사 99.75㎡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Y, DZ에 있는 EE호 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 저장고 66㎡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Y, DZ에 있는 EF호 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 창고 26.97㎡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Y, DZ에 있는 EG호 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돈사 199.55㎡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Y, DZ에 있는 EH호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돈사 169.6㎡ 부속건물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돈사 21.2㎡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Y, DZ에 있는 EI호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돈사 190.8㎡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Y, DZ에 있는 EJ호 석조 스테이지붕 단층 관리사 57.6㎡ 부속건물 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 다용도실 8.5㎡ 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 변소 1.44㎡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Y, DZ에 있는 EK호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140㎡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Y, DZ에 있는 EL호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140㎡

AL농장

순번	부동산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M 임야 752㎡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N 도로 230㎡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O 임야 56㎡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P 과수원 1443㎡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Q 도로 74㎡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R 과수원 6㎡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S 과수원 2663㎡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T 도로 61㎡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U 과수원 16㎡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V 과수원 65㎡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W 전 1137㎡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 전 1064㎡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Y 전 1235㎡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M, EP, ES에 있는 EZ호 파이프조 강관지붕 단층돈사 341.25㎡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M, EP, ES에 있는 FA호 파이프조 강관지붕 단층돈사 341.25㎡
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M, EP, ES에 있는 FB호 파이프조 강관지붕 단층돈사 341.25㎡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M, EP, ES에 있는 FC호 파이프조 강관지붕 단층돈사 341.25㎡
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M, EP, ES에 있는 FD호 파이프조 강관지붕 단층돈사 391.50㎡
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M, EP, ES에 있는 FE호 파이프조 강관지붕 단층돈사 383.76㎡
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M, EP, ES에 있는 FF호 파이프조 강관지붕 단층폐비사 303.00㎡
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M, EP, ES에 있는 FG호 파이프조 강관지붕 단층창고 68.40㎡
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S에 있는 EZ호 블록조 박공지붕 단층감압저장고 66㎡
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S에 있는 FA호 블록조 박공지붕 단층돈사 120㎡
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S에 있는 FB호 블록조 박공지붕 단층돈사 55.59㎡
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S에 있는 FC호 블록조 박공지붕 단층돈사 197.10㎡
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Y 블록조 스테트지붕 단층창고시설 105.12㎡

AJ농장

순번	부동산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H 목장용지 1983㎡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I 전 3852㎡
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J 잡종지 612㎡
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K 전 380㎡
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H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축사(돈사) 250.56㎡
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H에 있는 FL호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축사(돈사) 363㎡
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H에 있는 FM호 철파이프조 칼라강판지붕 단층축사(돈사) 347.76㎡
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J, FH 시멘트블록조 및 철파이프조 슬레이트 및 칼라강판지붕 단층 동물및식물관리시설 250.02㎡ 부속건물 새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사료보관창고 및 다용도실 48.48㎡ 철근콘크리트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18㎡
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I, FN 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 축사(돈사) 738.76㎡
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I, FN에 있는 FL호 블록 및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축사(돈사) 644.0㎡
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I, FN에 있는 FM호 강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축사(돈사) 399㎡

